다산학 46호 (2025.6) | 139~186

『춘추고징』의 예론과 정치질서

전성건 | 국립경국대학교 교수

목차

1. 서론
2. 『춘추고징』의 성립 과정과 구성 내용
3. 『춘추고징』의 이해 방식과 주요 쟁점
4. 『춘추고징』과 예치 질서의 관계
5. 결론

1. 서론[1]

다산 정약용(1762~1836)의 저술 『춘추고징』은 종교론(祭天)과 예론의 입장에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2] 상제上帝(天神)를 제사하는 교제郊祭의 의미와 왕조례의 예론을 재정립한다는 의미를 밝히는 것이 『춘추고징』의 저술 이유였기 때문이다. 다산은 「춘추고징서」에서 "책이 완성되자 『춘추고징』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고징考徵'이란 바로 그 뜻이 예禮에 있지, 『춘추』에 있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3]라고 하였다. 『춘추』는 일반적으로 포폄과 상벌의 대상이었지만, 다산은 선왕의 전례를 고징할 만한 것으로 생각하였다.[4] 즉 선왕의 전례는 왕조례에 해당하고 『춘추』는 주나라 예제로서의 주례周禮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이해한 것이다.[5]

---

1) 이 글은 "다산 정약용의 예학과 통치론"을 주제로 2024년 5월 3일 남양주시·다산학술문화재단에서 주최한 다산학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다. 논평자로 참여해주신 김동민 선생님께서 몇 가지 질의와 생각을 공유해주셨다. '질의'는 『춘추고징春秋考徵』, 「체禘(1-10)」의 기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교제와 사직, 그리고 체제의 위상에 대한 논증이 있어야 하며, 『경세유표』와의 관련성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 등이며, '생각'은 다산 기획의 성공 여부, 당대 정치 질서에 대한 비판과 대안의 결과물로써 『춘추고징』을 이해할 수 있는지, 춘추학의 입장에서 『춘추고징』의 위상을 살펴보아야 할 것 등이다. 질의는 4장에서 추가 서술을 통해 보완하였으며, 생각은 5장에서 부족하나마 답변을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수정해주신 번역은 충실하게 반영하였고, 제목도 조금 수정하였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 琴章泰, 「茶山禮學에서의 祭天儀禮 問題: 春秋考徵을 中心으로」, 『한국학』 35호, 1985; 금장태, 「茶山의 社稷祭와 禘祭 考證」, 『종교학 연구』16, 1997.

3) 『文集』 권12, 序, 「春秋考徵序」(『定本』 제2책, 398쪽). "編旣成, 名之曰『春秋考徵』. '考徵'也者, 明其意在乎禮, 不在乎『春秋』也."

4) 『文集』 권12, 序, 「春秋考徵序」(『定本』 제2책, 397쪽). "世之習春秋之學者, 恒于褒貶貶鉞之義, 鑽研致力, 而其先王典禮之可徵於後世者, 率皆略之而弗顧."

5) 『文集』 권12, 序, 「序」(『定本』 제14책, 35쪽). "『春秋』者, 周禮之所徵也. 欲知周禮者, 其不考之於『春秋』乎?"

그다음 연구는 『춘추고징』 전체를 개괄하여 다산 철학의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6] 그 특징은 크게 4가지이다. 첫째 상제의 초자연성·상제와 물적物的 세계의 분별·상제 이외 신격神格들의 물적 환원, 둘째 인격의 신령성, 셋째 정리情理에 대한 공도公道의 우선성, 넷째 입후론(왕조례와 사서인례의 분별)이 그것이다.

「자찬묘지명」에서 제시한 『춘추』 의례義例의 7가지 핵심을 『춘추고징』을 통해 다룬 연구도 있다.[7] 첫째, 주나라의 정삭을 내걸어야 한다. 둘째, 『춘추』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록하여 선악이 저절로 드러나게 한 것이다. 셋째, 『춘추좌씨전』은 당시 사실의 기록에 해당하는 것이다. 넷째, 교제는 상제에게 지내는 제사이다. 다섯째, 체제禘祭는 인제人帝를 배향하는 목적을 지닌 것이다. 여섯째, 동지에 환구에서 지내는 제사는 특별한 때 지내는 회례禮禮이다. 일곱째, 두예杜預의 양암설諒闇說은 예가 아니다.

또한 『춘추고징』을 중심으로 다산의 경학방법론을 살펴본 것도 있다.[8] 다산의 경학저술을 중국 고대의 역사시대로부터 청대초엽까지의 훈고학적 성과(古訓)를 바탕으로 경전 사이의 사례분석(考徵)을 통해 완성되었다고 본 것이 바로 그것이다. 다산이 언言·동動 혹은 언言·행行을 구분하여 성현의 언사言詞와 행동行動을 각각 훈고와 고징에 배당하고 있다는 경학저술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다.[9]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상서고훈』과 『춘추고징』이다.

---

6) 李裕鎭, 「丁若鏞 『春秋考徵』의 硏究」, 『공자학』 5, 1999, 179쪽.

7) 전성건, 「다산의 『춘추』의례와 『춘추고징』의 위상」, 『민족문화연구』 77, 2017, 460~461쪽.

8) 전성건, 「다산 정약용의 춘추학과 경학방법론 – 『춘추고징』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40, 2016.

9) 『春秋考徵』 1, 序, 「序」(『定本』 제14책, 35쪽). "『春秋』者, 六藝之一, 古之所謂'左史'也. 王道行, 則其一言一動, 皆可爲經, 故『書』與『春秋』列于六經."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추고징』이라는 편명에는 '고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춘추'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춘추학의 입장에서 연구된 것도 있다.[10] 다산의 『춘추』에 대한 이해, 『춘추』의 예제에 대한 원리와 고증의 원칙, 그리고 두예의 비판과 변론에 대한 것이 그것이다. 요컨대, 은공·장공·민공·희공은 모두 시해를 당한 임금을 계승하였고, 즉위식도 전년에 미리 거행했는데, 즉위를 미리 거행한 잘못을 숨기기 위해 즉위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다(不書卽位)는 것이 결론이다.[11]

그다음 『춘추』의 예제에 대한 원리과 고증의 원칙은 "1년을 넘겨야 관작을 칭할 수 있다."(踰年稱爵)라는 것의 타당성을 논증한 연구도 있다.[12] 두예나 공영달 등이 제기한 '장례를 치르고 나서 바로 상복을 벗는다'(旣葬除服)는 원칙과 '장례를 치르고 나서 바로 군이라고 칭할 수 있다'(旣葬可稱君)는 원칙을 비판하면서 관작 칭호의 시점은 장례가 아니라 '유년踰年'이라는 원칙을 분명하게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종묘의 사시제四時祭와 납향제臘享祭의 의미를 『춘추고징』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이 있다.[13] 사시에 행해지는 조선의 종묘 제향은 맹월孟月에 진행되는데, 이는 중월에 행해야 하며, 납일에 행해지는 납향은 삼대의 제사가 아니니,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의 요지

10) 김동민, 「茶山 丁若鏞의 『春秋』에 대한 이해와 해석 방법 – 『春秋考徵』의 '不書卽位'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온지논총』 31, 2012; 김동민, 「『春秋』의 禮制에 대한 『春秋考徵』의 분석과 고증 – 喪禮의 '踰年稱爵' 원칙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49, 2012; 김동민, 「茶山 『春秋考徵』의 杜預에 대한 비판과 변론」, 『동양철학연구』 71, 2012.

11) 김동민, 「茶山 丁若鏞의 『春秋』에 대한 이해와 해석 방법 – 『春秋考徵』의 '不書卽位'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온지논총』 31, 2012, 274쪽.

12) 김동민, 「『春秋』의 禮制에 대한 『春秋考徵』의 분석과 고증 – 喪禮의 '踰年稱爵' 원칙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49, 2012, 59·84쪽.

13) 신진혜, 「정약용의 종묘 사시(四時)·납향(臘享) 고증과 그 의미」, 『역사와 현실』 97, 2015.

이다.[14]

여기에 더해 본 논문과 가장 관련이 있는 논문이 제출되었는데, 그것은 '귀신의 공공성과 제사의 정치'에 대한 것이다.[15] 다산이 상제-귀신론의 형이상학적 세계를 재구성한 것이 세속 정치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이다.

본 논문은 이상의 연구 성과들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본 논문은 『춘추고징』의 분석을 통해 『경세유표』 등에 나타나는 예치 모형의 토대를 확인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춘추고징』에 보이는 상제上帝 → 천신天神 → 지기地示 → 인귀人鬼의 '제사의 질서'를 통해 군주君主 → 삼공三公·삼고三孤 → 신하臣下 → 인민人民의 이른바 '통치의 질서', 즉 '예치의 질서'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2장에서는 『춘추고징』의 성립 과정과 구성 내용을 살펴보았다. 『춘추고징』은 포폄과 상벌을 위한 미언대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저술이 아니라, 주나라(노나라)에서 실제로 설행한 전례로서의 주례를 고징하고자 작성된 것인데, 특히 『춘추고징』의 의례義例를 고징한 이유는 『상례사전喪禮四箋』을 작성하면서 주나라 예제가 설행된 사례를 살펴보기 위한 일환이었다는 점을 전제로 그 성립 과정과 구성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3장에서는 『춘추고징』의 이해 방식과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길례와 흉례에 집중되어 있는 『춘추고징』의 이해 방식은 고례古禮의 설행을 고징하는 데에 특장이 있고, 상제 → 천신 → 지기 → 인귀의 구별에 따

14) 신진혜, 「정약용의 종묘 사시(四時)·납향(臘享) 고증과 그 의미」, 『역사와 현실』 97, 2015, 318쪽.

15) 이 논문은 2023년 12월 8일 서울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명례방에서 개최된 제37회 다산학 국내학술회의 "다산 정약용과 서학"에서 백민정 교수가 발표한 「귀신의 공공성과 제사의 정치: 상제-귀신의 논리로 본 정약용의 정치 형이상학」이다.

라 예제의 실천에도 차이가 생긴다. 『춘추』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에 주소注疏를 단 정현, 공영달, 두예 등의 해석을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비판했는지를 살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4장에서는 『춘추고징』과 예치 질서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주나라가 쇠퇴하여 고례가 무너지는 상황을 역사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예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다산의 의도는 『춘추』라는 서물書物을 다루고는 있지만 다산 당대 조선의 예치 질서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전제해야 한다. 조선의 현실 정치질서의 바로미터가 되는 주나라 예제를 확립함으로써 다산 자신이 체계화하려고 했던 이른바 '예치의 모형'을 재구성해 보는 것은 다산의 경학은 물론, 경학의 실천적 적용인 경세학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춘추고징』의 성립 과정과 구성 내용

『춘추고징』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길례吉禮·흉례凶禮·군례軍禮·빈례賓禮·가례嘉禮 등 왕조례의 오례五禮 가운데 주로 길례와 흉례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춘추고징』 잡례雜禮에 길례·흉례·군례·빈례·가례를 다루고 있지만, 소략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춘추고징』의 완성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다. "빈례·군례·가례에 있어서는 하나를 들면 셋을 반추할 수 있다.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면 보완하여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논의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이를 확인해 준다.[16]

16) 『春秋考徵』1, 序, 「序」(『定本』 제14책, 35쪽). "至於賓·軍·嘉三禮, 擧一可以反三, 苟有同好, 庶其補成, 今不論也."

『춘추고징』은 크게 정립鼎立과 증보增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정립의 시기는 초고본과 재고본을 작성한 때이고, 증보의 시기는 해배 이후 '『춘추고증春秋考證』'을 '『춘추고징春秋考徵』'으로 변경한 때이다. 초고는 1808년 겨울 기초起草하여 둘째 아들 학포學圃(丁學游)가 받아 적은 것이고, 재고는 1812년 겨울 제자 이강회李綱會(李紘父)의 도움을 받아 다산이 편정編正한 것이다. 1817년 「증신영로贈申穎老」에게 준 글에 '『춘추고증春秋考證』 10권'으로 표기되어있는 것을 보면, 증보의 과정을 거치면서 서명을 변경한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17)]

1822년 작성된 「자찬묘지명」 이후 『춘추고징』의 권수가 12권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1817년부터 1822년 전후로 증보의 과정이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증보 시기는 다시 4단계로 구분되는데, 1차 증보는 1821년 춘추삼전春秋三傳을 읽다가 오례五禮 관련 기사에서 의심나는 것을 「노례고魯禮考」라는 이름으로 상자 속에 보관했던 것을 「잡례雜禮」 항목에 추가시킨 것 및 1808년 겨울 다산이 『춘추좌씨전』을 강학하면서 '환공6년조桓公六年條'까지 학포가 기록했던 「좌전소잠左傳小箴」을 「잡례」 항목에 추가시킨 것을 말한다.

2차 증보는 1826년 「정씨육천지변鄭氏六天之辨」, 「선유논변지이先儒論辨之異」, 「정씨체제지변鄭氏禘祭之辨」을 추가한 것으로, 교제郊祭와 체제禘祭에 대한 정현鄭玄의 학설을 비판하고, 진혜전秦蕙田이 편집한 『오례통고五禮通考』「길례吉禮」에 실린 오류를 해당 본문에 싣고 자신의 비평을 추가한 것을 말한다.

3차 증보와 4차 증보는 각각 1830년 봄과 1833년 가을 「체지설禘之說」을 추가하고 수정한 것이다. 이러한 편차 구성은 1830년대 「열수전서총

17) 김보름, 「정약용 저작집의 형성과 전승」,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6, 86~88쪽.

목록」을 통해 4책 12권본 체재로 확정되었고, 1830년과 1833년 증보된 것은 편차의 재조정이 아니라 「체지설」 일부를 추가하는 정도에 불과하다.[18] 그런데 「체지설」의 추가는 다산의 상제론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체禘'란 제왕을 위한 제사로【글자가 '기示'와 '제帝'로 구성되어 있다.】 오제五帝에 대한 제사이다. 『주례』 6편에는 도무지 '체禘' 자가 없는데, 대제大祭가 『주례』에 빠져있다는 것을 용인한다니, 이런 이치가 있겠는가? …… 『주례』에는 상제를 제사하는 것 이외에 오제를 제사하는 것도 함께 있다. …… '오제'란 인제人祭이니, 또한 반드시 상제를 배향한 이후에 제사해야 한다. …… 그런데 정현은 잘못 생각하여 오제에 대한 제사를 모두 '오방천제五方天帝'라고 지칭하였으니, 제례를 무너뜨리고 어지럽게 하는 것이 법식이 되어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내가 예전 다산에 있었을 때, 팔체八禘의 잘못을 논하면서도 『주례』의 '제오제祭五帝'가 진실로 '체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 후 그렇다는 것을 알았고 (『춘추고징』의) 편차가 이미 완성되었는데도 미처 개정하지 못하였다. 이제 이런 사정을 적어 팔체八禘 앞머리에 두었다. 나의 쇠락하고 게으른 것이 이와 같다. 경인 수춘首春에 용鏞이 기록한다.[19]

---

18) 자세한 『춘추고징』의 작성 과정 및 가장본 『춘추고징』의 문헌 검토는 《定本 與猶堂全書 14》 『春秋考徵』에 실린 박종천의 해제 및 박종천, 「가장본家藏本 『춘추고징春秋考徵』과 『민보의民堡議』의 문헌적 검토」, 『다산학』 39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21 참조.

19) 『春秋考徵』 2, 吉禮, 「禘之說」(『定本』 제14책, 114쪽). "'禘'者, 帝祭也,【字從示從帝】 五帝之祭也. 『周禮』六篇都無'禘'字, 如許大祭漏於『周禮』, 有是理乎? …… 乃『周禮』祭上帝之外, 並有五帝之祭. …… '五帝'者, 人帝也, 亦必配上帝而後祭之. …… 鄭玄差謬, 凡五帝之祭,

다산은 경인년(1830) 초봄에 「체지설」을 추가하면서 체제禘祭는 상제를 배향한 이후 오제를 제사하는 인제人祭임을 분명히 하였다. 다산이 볼 때, 정현이 상제를 '오방천제五方天帝'라고 지칭하는 것은 제례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어지럽게 하는 매우 참람한 짓이었다. 그렇기에 다산은 먼저 『주례』에 체禘라는 글자가 등장하지 않지만, '오제를 제사한다'(祭五帝)는 표현이 체제였음을 고징考徵했다. 그리고 체제의 8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그것을 앞머리에 적어둔다고 하였다. 다산은 제의祭義를 분명하게 알고자 하는 사람은 체제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체제의 8가지 사례를 소개했다.[20]

첫째, 선조의 소자출所自出을 주향으로 선조를 배향하는 보본報本으로써의 체禘. 둘째, 체제와 협제를 태조에 올려 합제하여 소목을 살피는 체. 셋째, 상례를 마치고 지내는 길제吉祭로서의 체. 넷째, 정현이 시체始禘라고 말하는 연제練祭를 마치고 지내는 체. 다섯째, 사시의 상제常祭인 시향時享으로서의 체. 여섯째, 환구圜丘에서 지내는 체. 일곱째, 방택方澤에 지내는 체. 여덟째, 임금의 소자출을 위해 올리는 체. 이상을 추가하여 작성된 『춘추고징』의 전체 구성과 핵심 내용은 다음 쪽의 표와 같다.

皆指爲五方天帝, 壞亂祭禮, 式至于今. 余昔在茶山, 論八禘之非, 而未悟『周禮』之'祭五帝'卽是眞禘. 其後雖知其然, 顧編次已成, 未及改正. 今題此于八禘之首以弁之, 其衰嬾如是矣. 庚寅首春, 鏞識."

20) 『春秋考徵』 2, 吉禮, 「禘一【論禘之別有八多出先儒之謬義】」(『定本』 제14책, 115쪽). "總之, '禘'者, 大祭之首也. 欲明祭義者, 必自禘始. …… 今論禘祭之別, 凡有八種. 其一曰'報本之禘'. …… 其二曰'諦視之禘'. …… 其三曰'喪畢之禘'. …… 其四曰'練後之禘'. …… 其五曰'時享之禘'. …… 其六曰'圜丘之禘'. …… 其七曰'方澤之禘'. …… 其八曰'出王之禘'."

항목	구성과 내용	비고
春秋考徵序		
吉禮(郊)	郊一【論魯之郊禘, 始於僖公】	祀帝于郊, 配以后稷
	郊二【論古之郊期, 本在建卯之月】	春分時辛日, 是郊之正期
	郊三【論子月冬至, 無郊天之法】	『周禮』六篇, 無冬至祭天文
	郊四【論北郊祭地, 非先王之法】	古有配天, 未有配地
	郊五【論五方天帝之祭, 非先王之法】	五方天帝之說, 起於騶衍
	郊六【論明堂配食, 非先王之法】	凡出治之所, 在內在外, 皆稱明堂
	郊七【論四玉之禮四方, 卽四望之祭】	四方玉器, 明是四望所用
	郊八【論龍見而雩, 非祭五方天帝】	雩者, 禱天也
	郊九【論司中司命, 非文昌二星】	司中者, 不知何神
吉禮(社)	社一【論社稷之禮, 以二官配二神】	天神·地示, 同是天神 后土·后稷, 同是官名
	社二【論勝國之社稷, 無屈辱示戒之法】	蓋夏后以前, 五帝禪受, 自無遷社之理
	社三【論五祀本五行之神, 非戶竈門行中霤之神】	五行者, 地産之物
吉禮(禘)	禘之說	1830년 봄 3차 증보 1833년 가을 4차 증보
	禘一【論禘之別有八, 多出先儒之謬義】	禘者, 大祭之首
	禘二【論殷周禘嚳, 爲禘祭之本】	禘者, 舜所制之禮也
	禘三【論五年一禘, 本非先王之法, 而合祭曰祫, 又非祭名】	禘者, 祭名也. 祫者, 祭儀也
	禘四【論三年喪畢, 本無諦昭穆之祭】	諦昭穆者, 杜預之私義也
	禘五【論小祥練祭之後, 本無始禘之祭】	豈謂朞年之後, 便當禘·嘗于新廟乎?
	禘六【論時享之禘, 各祭其廟曰犆禘, 合祭太廟曰祫禘】	凡所謂禘於某公者, 皆犆禘也. 凡單言烝, 單言嘗者, 皆祫祭也
	禘七【論祫祭必於太廟, 而群公之廟不可祫祭】	從祀先公, 在太廟也

吉禮(禘)	禘八【論圜丘方澤之奏樂, 本非禘祭】	二至奏樂, 本是禋禮
	禘九【論出王之禘, 在古經無徵】	孔子所觀者 , 群公之犆禘 , 非他禘也
	禘十【論肆獻祼饋食, 非禘祫之謂】	肆者, 陳罋也. 獻者, 獻罋也. 祼者, 灌罋也
	禘十一【論追享朝享, 非禘祫之謂】	余謂凡祭帝曰'禘', 不唯祭圜爲禘也
	禘十二【論詩序諸禘, 皆無實據】	禘也者, 必其所出尊於所祖
吉禮(時享)	時享一【論四時之祭, 宜用仲月】	宗廟四時之祭, 皆以仲月
	時享二【論禴】	禴者, 瀹也, 瀹菜以爲祭也
	時享三【論嘗】	嘗也者, 嘗新也. 嘗新也者, 嘗新穀也
	時享四【論烝】	物衆多曰烝
	時享五【論四時之祭, 公私同名】	私家之祭, 得與公家同名, 惟禘則不可
	時享六【論臘祭宗廟, 非先王之法】	臘者, 野人禱獵之祭也
	時享七【論四時正祭之外, 本無三薦四薦之禮】	天子之四祭·四薦, 其在九經·四書, 了無證驗, 不可遵也
吉禮(朔祭)	朔祭一【論告朔之祭, 謂之朝享】	『周禮』朔祭謂之'朝享'
	朔祭二【論朝享】	月朔加薦者, 謂因朔祭以薦新也
	朔祭三【論朝正】	凡人君謁廟·祭廟皆謂之朝
吉禮(廟制)	廟制一【論兄弟殷及不得爲左三昭右三穆】	南向曰昭, 北向曰穆, 太祖東向
	廟制二【論世室非世世不毁之名】	世世不毁之謂之太室, 無攸據也
	廟制三【論宗廟之制, 本無文世室武世室】	其云'文世室·武世室'者, 妄也
	廟制四【論桓僖之災, 非因不毁】	桓·僖之廟, 自此祧也
	廟制五【論妾母別宮之法】	嫡妻則配食於宗廟, 妾母則行事於下室, 皆不立宮
凶禮	序	余舊箋喪禮, 其儀文·制度, 多於『春秋』取徵
凶禮(違制)	違制一【魯隱公未葬臨戎, 衛惠公未葬臨戎, 晉襄公未葬臨戎】	先王之法, 一年無二君, 故踰年則稱君, 不踰年則稱子
	違制二【宋共公未葬從戎, 衛定公未葬從戎, 陳懷公未葬從戎】	天子未葬, 七月居廬, 未有命戒, 禮也
	違制三【宋襄公未葬赴會, 陳共公未葬赴會】	故禮例無論既葬·未葬, 未踰年則稱子, 踰年則稱君

凶禮(違制)	違制四【鄭定公未葬朝隣, 魯昭公未葬大蒐】	杜氏執此二字, 以立其諒闇之法, 豈不悖乎?
	違制五【天子未葬, 諸侯會盟, 天子未葬, 陪臣會盟】	諸侯之於天子, 斬衰三年, 不此之爲, 吉服以會盟, 書之, 所以著無君也
	違制六【齊桓公·鄭悼公·齊靈公·鄭簡公, 旣葬臨戎】	本非『春秋』之正例
	違制七【宋殤公·齊襄公·陳穆公, 旣葬赴會】	다산의 언급 없음
	違制八【魯桓公·魯閔公·曹共公·衛成公·魯文公·衛獻公·齊莊公, 旣葬會盟】	杜氏自立諒闇之法, 以誣先王之典
	違制九【魯襄公旣葬受享, 晉平公旣葬歌舞】	堂堂中國, 周之子孫, 乃爲是乎?
	違制十【楚靈王·魯昭公·晉昭公, 未祥享賓】	觀其祝辭, 去夷狄不遠矣
	違制十一【魯莊公·魯文公·魯宣公, 在喪而娶】	此未練而圖昏, 甫練而成娶也. 倫理滅絶,
	違制十二【周惠王喪宴喪娶】	是年, 惠王之元年也
凶禮(謬義)	謬義一【辨弔生不及哀, 非謂旣葬除服】	杜預誣罔經典, 諂逢君惡, 不免爲名敎之罪人
	謬義二【辨旣葬未踰年, 猶不得稱王】	未踰年則不可以稱王
	謬義三【辨鄭忽不稱爵, 非國人賤之】	不書子忽, 貶之也
	謬義四【辨子般稱子, 非因未葬】	子般卒, 不踰年, 故不稱爵
	謬義五【辨曰君曰子, 在踰年不踰年】	孔子經例, 未踰年則書'其君之子', 踰年則書'其君'
	謬義六【辨稱爵待踰年, 施命須旣葬】	稱爵者, 必踰年卽位而後曰公曰侯, 一年無二君也. 施命者, 旣葬得發號施令.
	謬義七【辨卒哭非止哭之名】	'卒哭'者, 末虞也
	謬義八【辨未葬不施命, 非不稱王】	踰年則卽位, 卽位則稱王, 特未葬, 不能有命令耳
	謬義九【辨古無旣葬卽位之禮】	杜欲據之爲旣葬稱君之案, 不亦誣乎?
	謬義十【辨旣葬未踰年, 無稱君之法】	不踰年, 故稱子
	謬義十一【辨齊鄭失禮, 不足以破踰年稱爵之大義】	不可以此謂'旣葬, 可稱君'也

凶禮(謬義)	謬義十二【辨古無旣葬免喪之法】	此註又無故立其短喪之義
	謬義十三【辨稱子皆由不踰年】	不踰年 , 故稱子
	謬義十四【辨周景王之除服非庸典】	旣葬除服, 旣非古禮, 亦非時制
	謬義十五【辨子與世子, 義無深淺】	世子之爲子也, 深於稱子
凶禮(駁義)	駁義一【晉亦葬而小祥, 可以破杜義】	杜氏之法, 旣葬除喪
	駁義二【吳亦涉三年而除喪, 可以破杜義】	況吳蠻夷之國, 固未必嚴守三年之制
	駁義三【晉平公之母, 大功遂服, 可以破社義】	杜說之無據, 可知也
	駁義四【晉平公爲少姜遂服, 可以破杜義】	杜乃云'旣葬, 釋服', 可乎?
	駁義五【晉平公之子, 旣葬猶衰絰, 可以破杜義】	杜則以爲旣葬遂除喪服, 不亦謬乎?
凶禮(卽位)	卽位一	踰年卽位, 必於朝廟. 故'月正元日, 舜格于文祖. 春, 王正月, 公卽位'
	卽位二	名之曰君, 而原不卽位, 無是理也
	卽位三	不卽位, 何以稱元年也?
	卽位四	國亂, 則其卽位也彌急, 故子般卽位, 不待踰年
	卽位五	一年二君, 禮所禁也
	卽位六	祭可攝也, 賓可攝也, 會同可攝也, 軍旅可攝也, 惟卽位不可攝
	卽位七	『春秋』之例, 一年無二君, 故當年者諱之, 踰年者書之, 所以不同也
	卽位八	'公卽位'之公字, 最要著眼
	卽位九	『春秋』凡書'春, 王正月, 公卽位'者, 皆朝廟之卽位也
	卽位十	다산의 언급 없음
	卽位十一	君弑國亂, 新君不踰年而卽位, 此非明驗乎?
	卽位十二	古者卽位之法, 稱王·稱公之例, 無不洞然
凶禮	附見一條	'至于墓'以上, 會葬之事也
凶禮(書葬)	書葬一	葬與討賊各爲一事

凶禮(書葬)	書葬二	不葬則不書葬, 葬則書葬
	書葬三	有子·無子, 有廟·無廟, 於書葬無與也
	書葬四	文姜與聞乎弑桓, 哀姜與聞乎弑閔, 其與聞一也
凶禮 (葬小君)	葬小君一	妻先夫死, 雖士·庶人之家, 皆不成喪
	葬小君二	君氏之必爲聲子, 未可定也
	葬小君三	褒貶予奪, 不在吾手, 而是非善惡, 著於人目
	葬小君四	哀姜實未嘗配食於莊公. 故成風得升爲夫人也
	葬小君五	當時諸侯之以妾爲妻者, 多矣
	葬小君六	다산의 언급 없음
	葬小君七	宗廟之祭, 必有妃配, 毋論有罪·無罪, 旣出之母不可以配食
	葬小君八	婦先姑卒, 豈有旣哉?
	葬小君九	凡所謂'葬我小君'者, 皆臣子尊稱之辭
	葬小君十	穆姜淫姣亂德, 幽于東宮, 恐無配食之理
	葬小君十一	襄·昭·定·哀皆惑於嬖妾, 又皆尊其生母, 升爲夫人. 此皆魯禮之末失. 自桓以前, 不如是也.
	葬小君十二	'葬, 先輕而後重'者, 合葬之謂也
	葬小君十三	古者凡取女謂之娶, 不必娶妻曰娶也
凶禮 (葬天王)	葬天王一	『春秋』記天子之葬者五, 而崩則必書
	葬天王二	榮奢改葬, 古無此例
	葬天王三	以此推之, 諸侯之弔天子, 大夫必爲主矣
	葬天王四	過亦書, 中亦書, 不及亦書
凶禮 (葬諸侯)	葬諸侯一	唯萬國諸侯, 一時同奔, 無是理也
凶禮(賵襚)	賵襚一	母以子貴, 禮也, 妾以君貴, 非禮也
	賵襚二	含襚·賵臨, 一使可兼
辨	鄭氏六天之辨(禘者, 人帝之祭)	1826년 겨울 2차 증보
	先儒論辨之異	
	鄭氏禘祭之辨	
雜禮	序(『魯禮考』)	1821년 봄 1차 증보
	吉禮	

	凶禮	1821년 봄 1차 증보
	軍禮	
	賓禮	
	嘉禮	
	災異	
	【附見】左傳小箴	

『춘추고징』의 전체 구성은 크게 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길례와 흉례가 그것이다. 길례는 다시 교郊·사社·체禘·시향時享·삭제朔祭·묘제廟制로 구성되어 있고, 흉례는 위제違制·유의謬義·박의駁議·즉위卽位·서장書葬·장소군葬小君·장천왕葬天王·장제후葬諸侯·봉수賵襚로 구성되어 있다. 길례와 흉례 뒤에는 변辨과 잡례雜禮가 기재되어 있는데, 변은 정현 및 선유들이 체제를 해석한 것을 비판한 것이고, 잡례는 길례·흉례·군례·빈례·가례의 오례 및 재이災異에 대한 경문의 사례 가운데 의심나는 부분을 간략하게 검토한 내용 및 1808년 유배지 다산에서 『춘추좌전』 환공 16년조까지 강학한 것을 학포가 기록하여 명명한 「좌전소잠」을 부록한 것이다.

길례 교郊①~교郊⑨는 각각 노魯나라의 교제와 체제는 희공僖公에게서 시작된 것이고(郊①), 옛날 교제의 기일은 본래 건묘월建卯月(음력 2월)이고(郊②), 자월子月(음력 11월) 동지冬至에는 교천郊天하는 법이 없고(郊③), 북교北郊에서 제지祭地하는 것은 선왕의 법이 아니고(郊④), 오방천제五方天帝에게 지내는 제사는 선왕의 법이 아니고(郊⑤), 명당明堂에서 배식配食하는 것은 선왕의 법이 아니고(郊⑥), 사옥四玉으로 사방四方을 예우禮遇하는 것은 사망四望의 제사이고(郊⑦), '용현이우龍見而雩'는 오방천제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고(郊⑧), 사중司中과 사명司命은 문창文昌의 이성二星이 아님(郊⑨)을 논한 것이다.

길례 사社①~사社③은 각각 사社와 직稷의 예는 2개의 관직으로 두 신을 배향한 것이고(社①), 승국勝國의 사직은 굴욕을 주어 경계로 삼게 하는 법이 없고(社②), 오사五祀는 본래 오행五行의 신으로 호戶·조竈·문門·행行·중류中霤의 신이 아님(社③)을 논한 것이다.

1830년과 1833년 증보한 「체지설」은 선유들에게서 출현한 잘못된 체제禘祭에 대한 비판을 주요 사항으로 정리하여 작성된 것이다. 체禘①~체禘⑫는 각각 팔체八禘가 선유의 그릇된 생각에서 나온 것이고(禘①), 은나라와 주나라에서 곡嚳에게 체제를 드린 것이 체제의 근본이고(禘②), 5년에 1번씩 체제를 지내는 것은 선왕의 법이 아니고 합제合祭를 협祫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명칭이 아니고(禘③), 삼년상을 마치면 본래 소목을 따지는 것은 두예杜預의 사의私義에서 나온 것이고(禘④), 소상小祥의 연제練祭를 지내고 난 뒤에는 시체始禘의 제사가 없고(禘⑤), 시향에서의 체禘를 각각 해당 묘廟에 제사하는 것은 '특체特禘'라고 하고 태묘에서 합제하는 것은 '협체祫禘'라고 하고(禘⑥), 협제는 반드시 태묘에서 하고 군공群公의 묘에서는 협제하지 않고(禘⑦), 환구圜丘와 방택方澤의 주악奏樂은 본래 회례禫禮이지 체제가 아니고(禘⑧), 출왕出王의 체제는 고경古經에서 징험할 것이 없고(禘⑨), 사헌관과 궤식은 체협禘祫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禘⑩), 추향과 조향도 체협이 아니고(禘⑪), 『시서詩序』의 여러 체설禘說은 모두 실제 증거가 없음(禘⑫)을 논한 것이다. 요컨대, 체제禘祭는 상제를 배향하면서 오제五帝에게 제사하는 인제人祭임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

길례 시향時享①~시향時享⑦은 각각 종묘에서 지내는 사시제四時祭는 모두 중월中月을 써야 하고(時享①), 약禴은 약채瀹菜를 제사로 지내는 것을 말하고(時享②), 상嘗은 신곡新穀을 맛보는 것이고(時享③), 증烝은 곡물이 많은 것을 말하고(時享④), 사시제는 공가나 사가나 명칭이 같고

(時享⑤), 종묘에서 납제臘祭하는 것은 선왕의 법이 아니고(時享⑥), 사시제라는 정제正祭 이외에는 본래 삼천三薦·사천四薦이 없음(時享⑦)을 논한 것이다.

길례 삭제朔祭①~삭제朔祭③은 각각 곡삭告朔의 제사는 조향朝享을 말하고(朔祭①), 월삭月朔에 천신薦新하는 것은 삭제로 인해 신곡新穀을 올리는 것이고(朔祭②), 군주가 알묘謁廟하고 제묘祭廟하는 것은 모두 조朝임(朔祭③)을 논한 것이다.

길례 묘제廟制①~묘제廟制⑤는 각각 형제끼리 계승한 은나라는 좌삼소左三昭·우삼목右三穆이 될 수 없고(廟制①), 세실世室은 대대로 훼손하지 않는 명칭이 아니고(廟制②), 종묘의 제도에는 문세실文世室·무세실武世室이 없고(廟制③), 환공과 희공의 궁에 난 화제는 헐어야 하는데 헐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廟制④), 첩모를 위해서는 궁을 세우지 않음(廟制⑤)을 논한 것이다.

흉례 위제違制①~위제違制⑫는 각각 노은공魯隱公·위혜공衛惠公·진양공晉襄公이 장례를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에 임한 사례(違制①), 송공공宋共公·진정공陳定公·진회공陳懷公이 장례를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에 나간 사례(違制②), 송양공宋襄公·진공공陳共公이 장례를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회맹에 나간 사례(違制③), 정정공鄭定公·노소공魯昭公이 장례를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웃 나라에 조회하러 가거나 대수大蒐(狩獵)한 사례(違制④), 천자가 장례를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제후가 회맹하거나 배신陪臣이 회맹한 사례(違制⑤), 제환공齊桓公·정도공鄭悼公·제영공齊靈公·정간공鄭簡公이 장례를 마치고 전쟁에 임한 사례(違制⑥), 송상공宋殤公·제양공齊襄公·진목공陳穆公이 장례를 치르고 회맹에 나간 사례(違制⑦), 노양공魯襄公·노민공魯閔公·조공공曹共公·위성공衛成公·노문공魯文公·위헌공衛獻公·제장공齊莊公이 장례를 마

치고 회맹한 사례(違制⑧), 노양공魯襄公이 장례를 마치고 연향宴享을 받거나 진평공晉平公이 장례를 마치고 가무歌舞를 즐긴 사례(違制⑨), 초영왕楚靈王·노소공魯昭公·진소공晉昭公이 소상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빈에게 연향을 마련한 사례(違制⑩), 노장공魯莊公·노문공魯文公·노선공魯宣公이 상을 치르고 있을 때 아내를 맞이한 사례(違制⑪), 주혜왕周惠王이 상례를 치르면서 연향을 베풀고 아내를 맞이한 사례(違制⑫) 등 잘못된 제도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흉례 유의謬義①~유의謬義⑮는 각각 '산 사람에게 조문하되 슬픔에 미치지 못한 것'(弔生不及哀)은 장례를 치르고 상복을 벗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謬義①), 장례를 치렀지만 그해를 넘지 않았으면 여전히 왕이라고 칭할 수 없고(謬義②), 정홀鄭忽이 작위를 칭하지 않은 것은 국인國人이 천시한 것이 아니고(謬義③), 자반子般이 '자子'라고 칭한 것은 그로 인해 장례를 치르지 않은 것이 아니고(謬義④), '군君'이나 '자子'라고 말한 것은 그해를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에 달려 있고(謬義⑤), 작위를 칭하는 것(稱爵)은 그해가 넘기를 기다리고, 명을 내리는 것(施命)은 장례를 치른 뒤에 하고(謬義⑥), 졸곡卒哭은 곡을 그친다는 것을 명명한 것이 아니고(謬義⑦), 장례를 치르지 않았는데 명을 내리는 것은 왕을 칭하지 않는 것과는 관련이 없고(謬義⑧), 옛날에는 장례를 치르고 나서 바로 즉위하는 예가 없었고(謬義⑨), 장례를 치렀는데 그해를 넘기지 않았으면, 군이라고 칭하는 법은 없고(謬義⑩), 제齊나라와 정鄭나라가 예를 잃은 것은 그해를 넘기고 작위를 칭하는 대의大義를 파괴하기에 부족하고(謬義⑪), 옛날에는 장례를 치르고 나서 문상免喪하는 법이 없었고(謬義⑫), '자子'를 칭하는 것은 모두 그해를 넘지 못했기 때문이고(謬義⑬), 주경왕周景王이 상복을 벗은 것은 상법(庸典)이 아니고(謬義⑭), 자子와 세자世子는 의리상 깊고 낮은 차이가 없음(謬義⑮)을 밝힌 것이다.

흉례 박의駁義①~박의駁義⑤는 각각 진晉 역시 기년에 소상을 지냈으니 두예의 의리를 논파할 수 있고(駁義①), 오吳 역시 3년을 지내고 상기喪期를 마쳤으니, 두예의 의리를 논파할 수 있고(駁義②), 진평공晉平公의 어머니는 대공大功에 수복遂服하였으니, 두예의 의리를 논파할 수 있고(駁義③), 진평공이 소강少姜을 위해 수복하였으니, 두예의 의리를 논파할 수 있고(駁義④), 진평공의 아들이 장례를 마치고서도 여전히 최질衰絰을 하고 있었으니, 두예의 의리를 논파할 수 있다(駁義⑤)는 의리를 밝힌 것이다.

흉례 즉위卽位①~즉위卽位⑫는 각각 그해를 넘어 즉위할 때는 반드시 조묘朝廟에서 행하고(卽位①), 군君이라고 말하는데 즉위하지 않았다는 이치는 없고(卽位②), 즉위하지 않았으면 원년元年이라고 칭할 수 없고(卽位③), 국난國亂이 있으면 즉위할 때 그해를 기다리지 않고(卽位④), 한 해에 두 명의 군은 있을 수 없고(卽位⑤), 즉위는 대신할 수 없고(不可攝)(卽位⑥), 당해년은 휘諱하고 그해를 넘기면 이름을 쓰고(卽位⑦), '공즉위公卽位'의 '공公'자가 가장 중요하고(卽位⑧), 『춘추』에서 '춘春, 왕정월王正月, 공즉위公卽位'라고 한 것은 모두 조묘朝廟에서 즉위한 것이고(卽位⑨), 군시국란君弑國亂에는 그해를 넘기지 않고 즉위하고(卽位⑪), 옛날 즉위하는 법은 매우 분명하였다는 것(卽位⑫)을 밝히고 있다.

흉례 서장書葬①~서장書葬④는 장葬과 토적討賊은 관련이 없고, 장례를 치르지 않았으면 장례라고 쓰지 않고, 자식이 있고 없거나 묘가 있고 없고는 서장書葬과 관련이 없다는 것 등의 사례를 보여준다. 흉례 장소군葬小君①~장소군葬小君⑬은 아내가 남편보다 먼저 죽으면 사士·서인庶人의 집안이라도 삼년상을 할 수 없고, 자신의 생모를 높여서 폐첩嬖妾을 부인婦人으로 높이는 것은 노魯나라 양공襄公·소공昭公·정공定公·애공哀公 등이 저지른 잘못이고, '장례를 치를 때에 가벼운 것을 먼

저하고 무거운 것을 나중에 한다.'는 것은 합장合葬을 말한 것 등의 사례를 보여준다. 흉례 장천왕葬天王①~장천왕葬天王④는 사치하면서 개장改葬하는 것은 옛날에는 없는 규례規例이고, 대부가 천자를 조문할 때는 대부가 반드시 주관한다는 것 등의 사례를 보여준다. 흉례 장제후葬諸侯①은 만국의 제후가 같은 시간에 분상하는 이치는 없다는 등의 사례를 보여준다. 흉례 봉수賵襚①~봉수賵襚②는 어머니가 자식을 귀하에 여기는 것은 예이지만, 첩이 군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예가 아니고, 함수含襚와 봉임賵臨은 겸할 수가 있다는 등의 사례를 보여준다.

변辨에는 정현의 육천설六天說에 대한 비판(「鄭氏六天之辨」), 선유가 논변한 것들의 차이에 대한 비판(「先儒論辨之異」), 정현이 체제禘祭를 설명한 것에 대한 비판(「鄭氏禘祭之辨」)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1826년 겨울 2차 증보 때 추가한 것이다. 잡례雜禮에는 서序, 길례·흉례·군례·빈례·가례·재이災異 및 부록인 「좌씨소잠左傳小箴」이 실려 있다. 1821년 봄 1차 증보 때 추가한 것이다.

3. 『춘추고징』의 이해 방식과 주요 쟁점

『춘추고징』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산이 경전으로서의 문헌을 살펴보는 방법을 일종의 경학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언사言詞와 행사行事의 구분이다. 성현의 언어적 표현과 행사적 증거를 통해 육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예컨대, 성현의 언사는 『상서고훈』이 대표적이고, 행사적 증거는 『춘추고징』이 대표적이다. 고훈古訓과 고징考徵의 경학방법론을 적용하여 저술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춘추고징』에 한정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춘추고징』에서 길례에 해당하는 교제郊祭·사제社祭·체제禘祭·시향時享·삭제朔祭·묘제廟制에는 '논論'이 적용되어 있고, 흉례에 해당하는 위제違制·유의謬義·박의駁義·즉위卽位·서장書葬·장소군葬小君·장천왕葬天王·장제후葬諸侯·봉수賵襚는 『춘추』의 다양한 사례事例를 제시하면서 정현과 두예를 중심으로 비판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체제禘祭에 대한 명시적인 표현이 『주례』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산은 체제의 역사적 실증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논論'이었다. 논論은 '논리와 근거에 따른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적용된 것이 바로 「체지설禘之說」[21]이다. 요컨대, 다산은 자신의 체제에 대한 학설을 전제로 교제·사제·체제·시향·삭제·묘제 각각에 대한 논리를 구성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였다. 다산의 학설(說)과 그에 따른 주장(論)은 상제上帝와 조신祖神의 '제사의 질서'를 정립하는 한편, 이를 국가 통치의 질서에 적용하여 이른바 '예치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전제로 다산의 저술 『춘추고징』에서 다루는 길례의 쟁점을 살펴보자. 다산은 먼저, 교제가 『주례』 6편에 직접적인 표현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무형무질하면서 천지를 통어統御하는 유일무이한 상제에 대한 정제正祭로 건묘월建卯月 춘분시春分時 상신일上辛日에 사교四郊에서 천자의 일정에 맞춰서 지내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다음, 자월子月 동지

21) 『春秋考徵』 2, 吉禮, 「禘之說」(『定本』 제14책, 114쪽). "'禘'者, 帝祭也,【字從示從帝】五帝之祭也. 『周禮』六篇都無'禘'字, 如許大祭漏於『周禮』, 有是理乎? …… 乃『周禮』祭上帝之外, 並有五帝之祭. …… '五帝'者, 人帝也, 亦必配上帝而後祭之."

冬至에 제사를 지냈다거나 환구圜丘에 오방천제五方天帝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등의 사설邪說은 추연騶衍과 여불위呂不韋라는 간인姦人, 왕망王莽이라는 역신逆臣이 무속巫俗과 참위讖緯를 이용해 만든 것이고, 정현鄭玄이 이를 믿고 답습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임을 논증하였다.[22] 게다가 정현이 삼례三禮(『주례』·『의례』·『예기』)에 주석을 단 것이 이후 명明·청대淸代에 이르기까지 학자들에게 수용되어 이를 임금의 명령처럼 흠준欽遵하게 되었다는 것이 다산의 비판적 평가이다.[23]

사제社祭는 후토后土와 후직后稷이라는 2개의 관직이 상제를 보좌하는 천지의 백령百靈을 제사하는 의례로, 춘시春時 상갑일上甲日에 1번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인데, 이 역시 소사상제昭事上帝의 목적이 있는 의례 행위이다. 교제와 사제를 음양에 배속하거나 춘추에 2번 제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다산의 평가이다. 사직제는 나라와 제후를 세울 때 토전土田을 내리기 때문에 후토后土에게 고하는 것이고, 오사五祀는 본래 오행의 천신으로 땅에서 난 산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지기地示에 배열하였을 뿐, 다른 물신物神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사직과 오사는 『주례』에서 항상 병칭되던 것임을 밝힌다.[24]

---

22) 『春秋考徵』 1, 吉禮, 「郊五【論五方天帝之祭, 非先王之法】」(『定本』 제14책, 67쪽). "五方天帝之說, 起於騶衍, 盛於亡秦. 呂不韋著書, 雜取怪迂之說, 謬稱秦之先公, 歷祠五帝. …… 『春秋考徵』1, 吉禮, 「郊三【論子月冬至, 無郊天之法】」: 鄭玄襲亡秦五帝之邪說, 信緯書感生之妖言."

23) 『春秋考徵』 4, 辨, 「鄭氏禘祭之辨」(『定本』 제14책, 303쪽). "康成注經, 最稱三禮, 而其錯誤如此. 吉禮爲五禮之首, 郊·禘爲吉禮之首, 而叢雜妖妄, 無一而當於理, 王肅斥之是矣. 而王肅終不得立, 鄭玄終不得廢, 所謂郊祀之典, 下逮明·淸, 欽此欽遵, 靈威仰·赤熛怒遂篡上帝之位. 嗚呼, 其何言矣?"

24) 『春秋考徵』 2, 吉禮, 「社三【論五祀本五行之神, 非戶·竈·門·行·中霤之神】」(『定本』 제14책, 111쪽). "五祀者, 五行之神. …… 但五行者, 地産之物, 故五祀列於地示. …… 五方天帝者, 騶·呂之邪說也. …… 社稷·五祀, 『周禮』每以並稱. …… 此邪說之藪·淫祀之叢. 「祭法」

> 체제禘祭의 뜻은 공자孔子가 말하지 않아 후세에 전하는 바가 없으니, 그 큰 뜻을 대략 볼 수 있는 곳은 오직 이 『예기禮記』의 「대전大傳」과 「상복소기喪服小記」 두 글 뿐이다. 이제 이 두 글을 상세하게 살펴보건대, 체禘는 순舜이 제정한 예禮다. 천하의 대의大義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친친親親이고 다른 하나는 존존尊尊인데, 두 가지 의義는 쌍립雙立하니, 한쪽만을 폐해서는 안 된다.[25]

다산은 은나라와 주나라에서 곡嚳에게 체제를 드린 것이 체제사의 근본임을 논하면서, 『좌씨외전』을 활용하고 『예기禮記』「제법祭法」으로 부연하였으며, 『예기』「대전」의 글과 『예기』「상복소기」의 글을 통해 이를 확증하고 있다. 『예기』「대전」에서는 "예禮는 왕王이 아니면 체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왕자王者는 그 조祖가 말미암아 나온 근본에게 체禘제사를 하고, 그 조祖를 거기에 배향한다."라고 하였고, 『예기』「상복소기」에서는 "왕자王者는 그 조祖가 말미암아 나온 근본에게 체제사를 하고, 그 조祖를 거기에 배향하되, 4묘廟를 세운다. 서자庶子인 왕王도 그와 같다."라고 하였다.

공자가 체제사를 말하지 않아 후세에 전하는 것이 없지만, 이 글을 통해서 체제사의 뜻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다산의 생각이다. 요컨대, 다산

之不可信, 至於是矣. …… 五祀者, 五行之神. 此蔡墨稽古之言也. …… 後世五祀之法, 備見『通典』, 皆非先王之法, 今並略之. ○總之, 句芒·祝融之等於今亦已荒遠, 祭之五祀, 亦殊無義. 此知禮者所宜講也."

25) 『春秋考徵』 2, 吉禮, 「禘二【論殷·周禘嚳爲禘祭之本】」(『定本』 제14책, 118쪽). "禘祭之義, 孔子不言, 後世無傳. 其可以略見大意者, 惟此「大傳」·「小記」二文而已. 今詳二文, 禘者, 舜所制之禮也. 天下之大義有二, 一曰親親, 二曰尊尊, 兩義雙立, 不可偏廢."

은 체제사가 순임금이 친친親親과 존존尊尊의 대의大義를 가지고 제정한 예임을 주장한 것이다. 그런데 체제사의 형태가 시대가 흘러 가면서 다양하게 변형되고 그 주체도 바뀌게 되었지만, 노나라 희공 때부터 참람하기는 하지만 곡嚳에게 체제사를 드린 사실을 고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다산의 고징이다. 후직后稷에게 교제사를 드리고 곡에게 체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징험하고 있는 것이다.[26]

『춘추고징』의 핵심은 역시 '체제禘祭'라고 할 수 있다. 상제上帝와 천신天神으로서의 오제五帝 그리고 지기地示와 조신祖神의 연결 관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1830년 봄과 1833년 가을 3차와 4차 증보가 이루어진 체제에 대한 설명은 그동안 진행된 『춘추고징』의 성격과 특징을 정리하고 그 역사적 사실을 보여준다. 선유들에게서 나온 체제에 대한 잘못된 해설을 비판하고 은나라와 주나라에서 지냈던 체곡禘嚳이 체제의 근본이었음을 밝힌 것이다.[27] 선친先親의 묘廟에서 선왕先聖의 제왕을 제사하는 것이 바로 체제의 묘의妙義이다.[28] 협제祫祭나 소목昭穆을 살피는 제사, 소상 때 연제를 지낸 뒤 지내는 제사, 시향의 체제, 환구와 방택의 제사 등은 모두 체禘라는 명칭을 지니고 있지만 체제禘祭가 변

---

26) 『春秋考徵』 2, 吉禮, 「禘二【論殷·周禘嚳爲禘祭之本】」(『定本』 제14책, 122쪽). "魯之郊稷, 明自僖公. 故『春秋』書郊, 自僖始也. 魯之禘嚳, 明自僖公. 故『詩』有「魯頌」, 自僖始也. 僖公欲僭王禮, 郊稷禘嚳. 此別是一法. 至於太廟之禘, 武公·莊公·襄公之禘, 皆非祭嚳之禘. 何者? 不祭后稷, 無以禘嚳. 武公·莊公之廟, 將何以禘嚳乎? 魯雖非禮, 必無是事."

27) 『春秋考徵』 2, 吉禮, 「禘一【論禘之別有八, 多出先儒之謬義】」(『定本』 제14책, 115쪽). "總之, 禘者, 大祭之首也. 欲明祭義者, 必自禘始. …… 今論禘祭之別, 凡有八種. 其一曰'報本之禘'. …… 其二曰'諦�firstly之禘'. …… 其三曰'喪畢之禘'. …… 其四曰'練後之禘'. …… 其五曰'時享之禘'. …… 其六曰'圜丘之禘'. 其七曰'方澤之禘'. …… 其八曰'出王之禘'."

28) 『春秋考徵』 2, 吉禮, 「禘二【論殷·周禘嚳, 爲禘祭之本】」(『定本』 제14책, 118쪽). "禘祭之義, 孔子不言, 後世無傳. 其可以略見大意者, 惟此「大傳」·「小記」二文而已. 今詳二文, 禘者, 舜所制之禮也. 天下之大義有二, 一曰'親親', 二曰'尊尊', 兩義雙立, 不可偏廢. …… 至舜始立禘祭, 使於先親之廟, 得祭先聖之帝, 此禘祭之妙義也."

형된 것이지, 체제가 갖고 있는 본래적 의미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향은 종묘에서 지내는 사시제四時祭로 중월仲月에 지내는 것이 근본이다. 사祠·약禴·상嘗·증烝은 모두 제물이 풍성한가 빈약한가에 따라 명칭을 세운 것일 뿐이다.[29] 또 사시제는 사가私家와 공가公家가 모두 동일한 명칭을 지니고 있지만, 서인의 경우는 특생犧牲을 사용하지 않기에 천薦이라고 부른다.[30] 또 『주례』에서 삭제朔祭라고 하는 것은 조향朝享을 말한다.[31] 인군人君이 알묘하고 제묘하는 것을 모두 '조朝'라고 하는데, 작은 일은 조향朝享 때 진행하고, 큰일은 조정朝正 때 진행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32]

묘제廟制는 세실의 경우 대대로 훼손하지 않는 명칭으로 태실太室이라고 하는데, 이는 근거가 없는 것이고, 당연히 종묘 제도에는 문세실文世室이나 무세실武世室이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33] 또한 첩모妾母를 위해 별궁別宮을 마련하는 법은 없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적처適妻의 경우 종묘에 배식配食하고 첩모는 하실下室에서 행사行事를 치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궁을 세우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29) 『春秋考徵』 2, 吉禮, 「時享四【論烝】」(『定本』 제14책, 156쪽). "祠·禴·嘗·烝, 皆以祭物之豐薄爲之立名. 其最豐者, 烝也, 【物衆多曰烝】 其最薄者, 禴也.【瀹菜以祭, 不用牲】 …… 周之定制, 雖以仲月爲正期. …… 大饗者, 大烝也. 烝也者, 衆也, 升也."

30) 『春秋考徵』 2, 吉禮, 「時享七【論四時正祭之外, 本無三薦·四薦之禮】」(『定本』 제14책, 163쪽). "天子之四祭·四薦, 其在九經·四書, 了無證驗, 不可遵也. …… 自天子達於庶人, 祭以仲月. 惟庶人之祭無牲, 故名之曰薦. 非四祭之外, 更有四薦也. 天子·諸侯凡得新物, 皆因朔祭而薦之, 無特祭也. …… 凡薦新之法, 或因時享, 或因朝享."

31) 『春秋考徵』 2, 吉禮, 「朔祭一【論告朔之祭, 謂之朝享】」(『定本』 제14책, 165쪽). "'朝于廟', 謂祭也. 『周禮』朔祭謂之'朝享'. 【「司尊彝」】 …… 饋者, 賓餼也. 賓者, 太史也. 並詳「論語說」, 玆不贅."

32) 『春秋考徵』 2, 吉禮, 「朔祭二【論朝享】」(『定本』 제14책, 168쪽). "小事行之於朝享, 大事行之於朝正. 斯皆唐·虞之遺文也. …… 月朔加薦者, 謂因朔祭以薦新也."

33) 『春秋考徵』 2, 吉禮, 「廟制三【論宗廟之制, 本無文世室·武世室】」(『定本』 제14책, 174쪽). "古者師行 , 必以遷廟主行【〈曾子問〉】爲稟命也. …… 其云'文世室·武世室'者, 妄也."

다.[34]

위제違制와 유의謬義 등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한 해에 두 군주가 있을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다산은 해를 넘겨야 군주라고 칭할 수 있고, 해를 넘기지 않으면 자식이라고 칭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35] 장례를 치렀는가 아직 치르지 않았는가와는 상관이 없다는 점도 분명하게 언급한다.[36] 두예杜預가 양암諒闇의 법(短喪)을 주장하는데, 이는 선왕의 법전을 무함誣陷하는 짓이고,[37] 심지어 '명교名敎의 죄인罪人'이라고까지 다산은 비판한다.[38] 또 연제를 아직 치르지 않았는데 혼례를 도모하거나, 연제를 지내고 난 뒤 바로 아내를 취하는 것은 윤리를 멸절시키는 일이라고 다산은 신랄하게 비판한다.[39]

---

34) 『春秋考徵』 2, 吉禮, 「廟制五【論妾母別宮之法】」(『定本』 제14책, 177쪽). "嫡妻則配食於宗廟, 妾母則行事於下室, 皆不立宮. …… 余謂考仲子之宮, 惠公之後妻也. 歸仲子之賵, 惠公之生母也."

35) 『春秋考徵』 3, 凶禮, 「違制 一【魯隱公未葬臨戎. 衛惠公未葬臨戎. 晉襄公未葬臨戎】」(『定本』 제14책, 181쪽). "先王之法, 一年無二君, 故踰年則稱君, 不踰年則稱子. 於國·於鄰, 其稱皆同."

36) 『春秋考徵』 3, 凶禮, 「違制三【宋襄公未葬赴會. 陳共公未葬赴會】」(『定本』 제14책, 186쪽). "原夫卽位之禮有三. 一是小斂卽位, 一是旣殯卽位, 一是踰年卽位. …… 故禮例無論旣葬·未葬, 未踰年則稱子, 踰年則稱君. …… 我邦古典, 但有旣殯之卽位, 更無踰年之卽位. 至其紀年也, 乃惟新年屬之新君, 在位幾年, 皆自新年計之. 此名實未允也."

37) 『春秋考徵』 3, 凶禮, 「違制八【魯桓公·魯閔公·曹共公·衛成公·魯文公·衛獻公·齊莊公, 旣葬會盟】」(『定本』 제14책, 195쪽). "踰年則卽位, 卽位則稱君, 不踰年, 則不卽位, 不卽位, 則不稱君, 此理之常也, 事之宜也. …… 禮例·經例, 兩皆明白. …… 杜氏自立諒闇之法, 以誣先王之典, 每欲以旣葬·未葬, 畫爲限界. 於是穿鑿傅會, 如此傳者多矣."

38) 『春秋考徵』 3, 凶禮, 「謬義一【辨弔生不及哀, 非謂'旣葬除喪'】」(『定本』 제14책, 202쪽). "古者弔禮, 有始死之弔, 有小斂之弔, 有大斂之弔, 有將葬之弔, 有反哭之弔. 除此以外, 更無弔名. …… 天子·諸侯不得同之於凡人. …… 杜預誣罔經典, 諂逢君惡, 不免爲名敎之罪人, 豈不惜哉? …… 惟是'諒闇終喪', 此是帝王之至行, 其見於經者, 高宗一人而已. …… 諒闇有二義, 一是居廬之名, 一是信默之意."

39) 『春秋考徵』 3, 凶禮, 「違制十一【魯莊公·魯文公·魯宣公, 在喪而娶】」(『定本』 제14책, 201쪽). "親喪外除, 旣禫而後, 乃卽吉也. 不過旬月, 則當無咎, 斯之不忍, 何以示民? 非禮也. …… 三年之內不圖婚. 娶者, 大吉也, 非常吉也. …… 此未練而圖昏, 甫練而成娶也. 倫理滅

즉위卽位의 주요 사항은 유년踰年의 원칙이다. 다만 해를 넘겨 즉위할 때는 반드시 조묘朝廟에서 진행한다는 점,[40] 제사祭祀와 빈례賓禮, 회동會同과 군려軍旅 등은 대리할 수 있지만(可攝) 즉위는 대리할 수 없다는 점[41] 등을 언급하는 한편, 군주가 시해를 당하거나 국가에 위난이 있을 때는 해가 넘어가는 것을 기다리지 않아도 즉위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제시한다.[42] 나머지는 장례와 관련된 잘못된 사례들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은 변辨에 해당하는 3편의 글이다. 「정씨육천지변鄭氏六天之辨」, 「선유논변지이先儒論辨之異」, 「정씨체제지변鄭氏禘祭之辨」이 바로 그것이다. 이 부분은 1826년 겨울 2차 증보 때 추가한 글이다. 특징은 왕숙과 정현의 주장을 나열하고 주로 왕숙의 견해를 엄정하고 정당한 주장이라고 평가한다는 점 및 상제上帝의 제사를 '교郊'라고 하고 오제五帝의 제사를 '체禘'라고 해야 한다는 점이다.[43] 여기에는

絶, 又何譏焉?"

40) 『春秋考徵』 3, 凶禮, 「卽位一」(『定本』 제14책, 223쪽). "自古攝政之禮, 但攝其政, 不攝其名. …… 禮法自天子出, 推是法而冒之諸侯亦當然. …… 卽位有三, 一是小斂卽位,【'檀弓免'·'子游衰'在此時】一是旣殯卽位,【周康王】一是踰年卽位.【舜格于文祖】踰年卽位, 必於朝廟. 故'月正元日, 舜格于文祖. 春, 王正月, 公卽位'.【文·宣·成·襄等】如是而後成君, 如是而後稱王·稱公, 如是而後稱崩·稱薨, 魯隱公未嘗不卽位也."

41) 『春秋考徵』 3, 凶禮, 「卽位六」(『定本』 제14책, 234쪽). "旣殯, 則卽位於應門, 踰年, 則卽位於大廟. …… 祭可攝也, 賓可攝也, 會同可攝也, 軍旅可攝也, 惟卽位不可攝.【朱子亦云: "他事可攝, 卽位豈可攝?"】何者? 卽位, 所以定君, 旣卽位, 卽位者爲君, 將誰爲君?"

42) 『春秋考徵』 3, 凶禮, 「卽位四」(『定本』 제14책, 231쪽). "國亂, 則其卽位也彌急, 故子般卽位, 不待踰年. 策書所記, 非謂小斂之卽位也. '立閔公'者, 閔公卽位也. 此旣卽位, 故元年不復行此禮."

43) 『春秋考徵』 4, 辨, 「鄭氏六天之辨」(『定本』 제14책, 283쪽). "王肅云: "至極之尊, 祇應是一." 只此一語, 嚴嚴正正, 無容再言, 而孔沖遠唯鄭是護, 雜引諸文, 强從非理之義. …… 上帝之祭, 其名曰郊, 五帝之祭, 其名曰禘,【禘者, 帝祭也】禘·郊之事, 其文本同. …… 自古以來, 禘者, 人帝之祭, 注家·疏家未有以禘祭爲東方靑帝·南方赤帝之祭者. 然其儀物悉與郊同. 由是觀之, 「司服」之同用衮·冕, 何得爲五帝是天之明驗乎? 此其誣經護鄭之跡, 一也. 「禮

다산의 상제론을 거론할 때 자주 등장하는 문장이 있다.

> 상제는 무엇인가? 상제는 하늘과 땅, 귀신과 인간 밖에서 하늘과 땅, 귀신과 인간 및 만물의 부류를 만들고(造化) 주재하면서 안정시키고 기르는 존재이다. '제帝'를 '천天'이라고 하는 것은 '왕王'을 '국國'이라고 하는 것과 같으니, 저 푸른 유형有形의 천天을 가리켜 상제라고 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교제郊祭와 여제旅祭의 일은 상제를 배향하는 것이다. 만약 천지와 사방에 예를 올리는 데 이르면, 이는 상제 이외의 천신天神에게 성대하게 예를 올리는 것이다. 천신에는 하늘을 담당한 것이 있고, 땅을 담당한 것이 있고, 국國·읍邑과 주州·현縣을 수호하는 것이 있는데, 사방에 포진되어 있으니, 이것이 육기六器를 만들어 경례敬禮를 성대하게 올리는 것이다. 하늘을 담당한 신에게 제사한다면 옥과 희생의 폐백을 갖추는데, 모두 하늘의 색깔을 따르고, 땅을 담당한 신에게 제사한다면 옥과 희생의 폐백을 갖추는데, 모두 땅의 색깔을 따

器」云'享帝于郊'者, 享昊天上帝也. 昊天上帝本祭于郊, 而五人帝亦兆于四郊者, 以其配上帝也. 先引'兆郊'之文, 次引'享郊'之文, 轉移遷就, 乃陰奪昊天風雨寒暑之權, 以授赤熛怒·白招拒之等, 其僭妄爲何如者? 此其誣經護鄭之跡, 二也. 『孝經』者, 有疑之書,【朱子有辨論】配天·配帝, 分其等級, 有若天大而帝小, 天尊而帝親者然. 故后稷配天, 文王配帝, 却又以配帝爲配天, 胡亂極矣. 自玆以降, 昊天上帝, 爲有形之碧天, 靈威·赤 熛, 爲宰物之大主, 悖逆天道, 莫此爲甚. 以皇極殿爲天子之身, 中坐五天子, 以理天下, 於義何如? 此其誣引護鄭之跡, 三也. 賈逵·馬融·王肅之等, 堂堂正論, 鄭義非也. …… 靑帝·赤帝之說本出緯書. 其妖邪屑越, 大悖極逆, 不可言也. 列星爲物, 無靈無覺, 乃以紫微一星尊之爲天皇大帝, 以太微五星命之曰五方天帝, 橫說豎說, 以誣上尊. 罪至於此, 何以赦之? …… 感生帝之說, 罔誕悖理, 而鄭玄偏信此說, 卽凡三禮·『詩』·『書』所稱'祭上帝'諸文, 悉指爲靑帝·赤帝, 或稱感生, 或稱當方, 誣先王之禮, 簒上帝之位, 厥罪大矣. …… 古者祭天之禮, 其正祭曰郊, 啓蟄而行之, 其日用辛,【見原篇】有事而告曰旅,【臚陳也】將出而告曰類,【見『詩』·『書』】冬至奏樂曰禋, 行之於圜丘,【見原篇】配之以人帝曰禘.【『周禮』所云'祭五帝'】皇天上帝唯一而已, 安有五哉?"

르고, 사방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교에서 상제에게 대제大祭를 올리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기에 이와 같이 어지럽히는가? 만약 하늘에 예를 올리는 것이 교천郊天이라면, 황황상제는 아래로 땅을 담당한 신 및 사방의 여러 신과 같은 반열에 있으면서 육옥六玉을 나누어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주공이 예를 잘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옛날에는 신을 섬길 때 등급(品秩)을 가장 중시하였기 때문에 '종백宗伯'을 '질종秩宗'이라고 칭하였다. 신에게 제사할 때도 호칭에 모두 등급(차례)이 매겨지는데, 사망四望은【단구】 산천에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사망 중에서) 오악五嶽은 삼공三公의 등급에 비견하여 제사지내고, 사독四瀆은 제후諸侯의 등급에 비견하여 제사지낸다. 옛날의 예법이 등급에 맞추어 제사지냈던 것이 이처럼 엄격하였으니, 상제가 아래의 토신이나 사방의 신과 똑같이 하나의 등급이 되어서 육옥六玉을 나누어 받아서야 되겠는가? 결코 그럴 리가 없다.[44]

이 부분은 마테오 리치의 『천주실의』에 등장하는 문장과 유사한 구절(上帝者, 何? 是於天地·神人之外, 造化天地·神人·萬物之類, 而宰制安養之者

44) 『春秋考徵』 4, 辨, 「先儒論辨之異」(『定本』 제14책, 300쪽). "上帝者, 何? 是於天地·神人之外, 造化天地·神人·萬物之類, 而宰制安養之者也. 謂帝爲天, 猶謂王爲國, 非以彼蒼蒼有形之天, 指之爲上帝也. 故郊·旅之事, 享于上帝, 至若禮天地·四方者, 是於上帝之外, 致禮乎天神者. 天神有司天者, 有司地者, 護持國邑, 護持州·縣者, 布列四方. 此所以作爲六器, 以致敬禮. 旣祭司天之神, 玉與牲幣, 皆從天色. 旣祭司地之神, 玉與牲幣, 皆從地色. 四方亦然. 此與郊天大祭, 何與何干, 顧若是之糾紛也? 若云禮天是郊天, 則皇皇上帝, 下與司土之神及四方諸神, 列爲同秩, 分受六玉, 亦不可曰"周公善制禮"也. 古者事神最重品秩. 故宗伯古稱秩宗. 祭神亦稱咸秩而四望【句】秩于山川, 五嶽秩于三公, 四瀆秩于諸侯. 古禮之嚴於秩如此, 乃以上帝下同土神及四方之神, 平爲一秩, 分受六玉, 可乎? 必無是矣."

也)이 있는 곳이다. 『주례』「대종백」에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대상이 적시되어 있는데, 천신과 지기 그리고 인귀가 그것이다. 상제는 유일무이한 조물자로서 하늘과 땅 그리고 귀신과 인간 밖에서 하늘과 땅 그리고 귀신과 인간 및 만물을 만들어내고 주재하면서 안정시키고 기르는 존재이다. 그런데 상제 이외 천신과 지기는 모두 동일한 존재로 상제를 보좌하는 신하이다. 동일한 천신이지만 하늘을 담당하면 천신이라고 하고 땅을 담당하면 지기라고 할 뿐이다. 그러므로 제사의 등급도 상제가 최상이고, 그 다음이 천신이며, 그 다음이 지기이다. 하늘과 땅을 담당한 천신과 지기 그리고 사방을 담당한 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은 육기六器를 만들어 경례敬禮를 성대하게 올리는데, 의례의 차이는 각각의 색깔에 따라 구별된다. 요컨대, 상제를 비롯하여 천신과 지기에게 제사하는 것은 등급을 엄격하게 구별하여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다. 이처럼, 무형무질의 유일무이한 상제에 대한 '제사의 질서'는 현실 정치에서 나타나는 '통치의 질서'의 모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4. 『춘추고징』과 예치 질서의 관계

다산은 『주례』「대종백」의 천신, 지기, 인귀의 관념에 따라 상제에 대한 제사인 교郊, 지기에 대한 제사인 사社, 인귀에 대한 제사인 체禘를 중심으로 『춘추고징』의 길례를 다룬다. 교郊는 건묘월建卯月(음력 2월)에 지내는 것으로 희공僖公에게서 비롯된 것인데, 상제에게 제사하는 것이며, 진인秦人이나 한유漢儒가 말한 것처럼, 오방상제五方上帝에게 지내는 것이 아니다. 사직社稷은 봄에 지내는 것으로 토신土神과 곡신穀神 등 지기에게 지내는 제사이다. 즉 오행(地産之物)과 곡穀으로 구성

되어 있는 육부六府의 신神에게 지내는 제사이다. 육부 가운데 토와 곡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기의 대표를 사직으로 삼은 것이다.[45)]

체禘는 상제에 짝한 뒤에 인제人祭인 오제五帝에게 지내는 제사이다. 체禘에 관한 학설이 8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제의를 밝히고자 하면 오제를 제사지내는 체제사를 이해해야 한다. 은殷나라와 주周나라에서 곡嚳에게 체제사를 드린 것이 체제사의 근본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근거는 노나라에서 곡嚳에게 체제사를 지낸 것이며, 『춘추』에서 그 시초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좋지 못한 일을 피했기 때문이다.[46) 47)]

이처럼, 『춘추고징』에서는 천신의 대표인 상제를 위한 제사를 교郊로, 지기의 대표인 사직을 위한 제사를 사社로, 상제에 짝하는 오제를 위한 제사를 체禘로 규정하고 그들의 위계질서와 역할을 제시한다. 다만 각종 제사의 명칭과 그 내용의 변화는 추연과 여불위 및 정현 등 진한秦漢 지식인들의 과오로 인한 것이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다산은 각종 사례를 징험하여 『춘추고징』의 의례義例를 규명했던 것이다.

제사 대상으로서의 귀신에는 3종류가 있다. 천신과 지기와 인귀가 그것이다. 천신은 상제와 그밖의 천신으로 구분되는데, 호천상제가 최고 위상을 지니면서 전체 귀신을 통어하고, 그밖의 천신은 일日·월月·성星·신辰, 사중司中·사명司命, 풍사風師·우사雨師를 담당하며, 지기는 사직社稷·오사五祀·오악五嶽·산림山林·천택川澤을 담당하며, 인귀는 선왕

45) 『春秋考徵』 2, 吉禮, 「社一【論社·稷之禮, 以二官配二神】」(『定本』 제14책, 105쪽). "六府之中, 土·穀尤大, 故別而尊之, 以爲社·稷. 五行之神, 其位相等, 故立爲五祀也. 后土之得兩祭者, 生穀之故祭於社, 居民之故祭於五祀也."

46) 『春秋考徵』 2, 吉禮, 「禘二【論殷·周禘嚳, 爲禘祭之本】」(『定本』 제14책, 122쪽). "由是觀之, 魯僖公之禘嚳, 不旣明乎? 若云非禘, 何以祭嚳? 『春秋』不書其始, 諱國惡也."

47) 禘의 變名과 그 내용 및 자세한 考徵에 대한 것은 「禘」(1-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先王·선공先公·선비先妣의 묘廟를 담당한다.

그런데 제사의 질서는 천신과 인귀로 수렴된다. 지기는 인신人臣 가운데 공훈이 있었던 사람을 사직·오사·오악·산림·천택 등에 천신天神과 함께 배향하기 때문에 실제 제사의 대상은 천신과 인귀라고 할 수 있다.[48]

공훈이 있었던 신하를 천신과 함께 배향하는 것은 상제가 군주 및 군주를 보좌하면서 공훈이 있었던 신하를 자신을 보좌하는 신하로 삼았기 때문이다. 천하의 군목君牧은 모두 상제의 신하가 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천자天子를 세울 때에는 상제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현자 가운데 잘 살펴서 선발해야 한다.[49] 이러한 선발에 대해 다산은 추대론推戴論을 제시한 적이 있다.[50] 「원목原牧」과 「탕론湯論」 등이 대표적인데, 「원목」은 이정里正 → 당정黨正 → 주장州長 → 국군國君 → 방백方伯 → 황왕皇王으로 확대되는, 「탕론」은 인장隣長 → 이장里長 → 현장縣長 → 제후諸侯 → 천자天子로 확대되는 하이상下而上 방식의 추대론을 제시한다. 「탕론」의 후속 작품인 「일주서극은편변逸周書克殷篇辨」(『梅氏書

48) 『中庸講義補』「鬼神之爲德節」(『定本』 제6책, 315쪽). "今按, 『周禮·大宗伯』, 所祭鬼神, 厥有三品, 曰天神, 二曰地示, 三曰人鬼. 天神者, 昊天上帝, 日·月·星·辰, 司中·司命, 風師·雨師, 是也. 地示者, 社稷·五祀·五嶽·山林·川澤, 是也. 人鬼者, 先王·先公·先妣之廟, 是也. 祭祀之秩, 雖有三品, 其實天神·人鬼而已. 何者? …… 社稷五祀, 是祭是祀, 則地示之本人鬼, 可知也. 天以天神, 各司水·火·金·木·土·穀·山·川·林·澤, 人主亦使人臣分掌是事. 及其後世, 乃以人臣之有功者, 配於天神, 以祭社稷, 以祭五祀, 以祭山川, 則名雖地示, 其實皆天神·人鬼也. 人鬼者, 人死之鬼. '天地功用', '二氣良能', 非所『論語』人鬼也. 天神者, 本無形質, 爲上帝之臣佐,【見『禮』注】昭布森列, 有號有位, 春官大祝, 實掌是事.【辨六號】"

49) 『論語古今註』 권10, 「堯曰第二十【凡六章】」(『定本』 제14책, 35쪽). "補曰天下君牧, 皆上帝之臣, 我不敢蔽賢. 其簡選以立天子, 惟在上帝之心. 簡, 閱也, 選也."

50) 『文集』 권11, 論, 「湯論」(『定本』 제9책, 391쪽). "五家爲鄰, 推長於五者爲隣長, 五鄰爲里, 推長於五者爲里長, 五鄙爲縣, 推長於五者爲縣長, 諸縣長之所共推者爲諸侯, 諸侯之所共推者爲天子. 天子者, 衆推之而成者也."

平』)도 제명帝命과 후대侯戴를 거론하면서 이상적 국가 모델을 제시한다.[51]

다산의 국가 모델은 『주례』를 중심으로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세유표』를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주례』의 체제는 「천관天官 총재冢宰」, 「지관地官 사도司徒」, 「춘관春官 종백宗伯」, 「하관夏官 사마司馬」, 「추관秋官 사구司寇」, 「동관冬官 고공기考工記」 6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관 고공기」를 제외한 각 편은 크게 서두의 '서관序官' 부분과 '직문職文'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서관'에서는 해당 장관의 주요 직무와 속관屬官의 조직 및 인원수를 기록하고, '직문'에서는 해당 속관의 구체적인 직무를 차례대로 서술하고 있다. 천天·지地·춘春·하夏·추秋·동冬의 자연법칙을 본뜬 것이다.[52] 이는 『경세유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周禮』						
六官	天官(治官)	地官(敎官)	春官(禮官)	夏官(政官)	秋官(刑官)	冬官(事官)
官長	大宰	大司徒	大宗伯	大司馬	大司寇	(大司空)
職掌	治理	敎育	禮事	軍政	刑法	(百工)
六典	治典	敎典	禮典	政典	刑典	事典

『經世遺表』						
六官	天官	地官	春官	夏官	秋官	冬官
官長	公	公	公	孤	孤	孤
職掌	邦治	邦敎	邦禮	邦政	邦刑	邦事
六典	吏曹	戶曹	禮曹	兵曹	刑曹	工曹

51) 『梅氏書平』 권4, 梅氏書平十, 「逸周書克殷篇辨」(『定本』 제13책, 328쪽). "其與秦以後之法, 天壤不侔者, 厥有兩端, 一曰'帝命', 一曰'侯戴'. …… 余昔作「湯論」. 今又書此以續之."

52) 金容天, 朴禮經 譯注, 『譯注周禮注疏』 1, 전통문화연구회, 2021, 21~22쪽 참조. 아래의 『주례』 표는 22쪽에서 가져온 것이다.

다산 정약용은 『방례초본인邦禮草本引』에서 경세학의 기본이념을 제시한다. "여기에서 논하고 있는 것은 법法인데, 법이면서 '예禮'라고 명명한 것은 왜인가? 선왕은 예를 통해 나라를 다스렸고 백성을 인도하였다. 그런데 예가 쇠해지자 법이라는 명칭이 생겼다. 법은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도 아니고 백성을 인도하는 방법도 아니다. …… 위협으로 공포를 조성하고 겁박으로 비참하게 하여 백성들이 벌벌 떨며 감히 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법法'이라고 말한다. 선왕은 예로 법을 삼았고, 후왕은 법으로 법을 삼았으니, 이것이 다른 점이다."[53] 예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예치의 정당성은 "성왕聖王이 천조天造를 계승하여 천황天荒을 열고 경기經紀를 세웠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 전등田等·부등賦等·공액貢額·공로貢路를 정하고, 오복五服의 제도를 세우고, 육부六府의 정사政事를 닦은 것은 모두 구주九州에 제도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하늘이 만든 철주鐵鑄가 이렇게 금석金石의 법전法典이 된 것이다."[54]라는 다산의 언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상제의 조화'(天造)와 관련된다. 이와 관련된 명제가 바로 '인량천공寅亮天工'이다.

다산은 의정부議政府를 구성하면서 치도治道를 논하고 방국邦國을 경영하여 '천공을 삼가 밝히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삼공三公과 삼고三孤를

53) 『經世遺表』 권1, 邦禮艸本引, 「邦禮艸本引」(『定本』 제24책, 26쪽). "玆所論者, 法也. 法而名之曰'禮', 何也? 先王以禮而爲國, 以禮而道民, 至禮之衰, 而法之名起焉. 法非所以爲國, 非所以道民也. 揆諸天理而合, 錯諸人情而協者, 謂之禮. 威之以所恐, 迫之以所悲, 使斯民兢兢然莫之敢干者, 謂之法. 先王以禮而爲法, 後王以法而爲法, 斯其所不同也."

54) 『尙書古訓』 권2, 堯典, 「肇十有二州, 封十有二山, 濬川【『書大傳』肇爲兆, 說文濬爲容】」(『定本』 제11책, 195쪽). "「禹貢」立制, 是聖王繼天造, 開天荒, 立經陳紀, 與天地更始之大法. 必於是時, 舜·禹同德, 而稷·契·皐·益, 一堂同會, 相與都兪吁咈, 以之定田等·定賦等·定貢額·定貢路 , 立五服之制 , 修六府之政 , 皆以九州立制. 天成鐵鑄, 爲此金石之典."

언급한다. 삼공은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을 말하고, 삼고는 도찬성·좌찬성·우찬성을 말한다.[55] 다산이 생각하는 직관職官의 제도는 통솔이 있어야 하는데, 그물에 벼리가 있는 것처럼, 옷에 깃을 다는 것처럼 해야 천공을 밝힐 수 있다.[56] 이들이 군주를 보좌하여 국가를 질서 있게 다스리는데, 이는 천신이 상제를 보좌하여 세계를 질서 있게 다스리는 것과 같다.

또 하나의 직관제도의 원칙은 '궁부일체宮府一體'이다. 궁중宮中과 부중府中의 일체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의정부와 육조가 궁중과 부중의 업무를 총괄하게 함으로써 궁중 의례에 들어가는 비용 등 군주君主의 가산家産을 통제하는 한편, 궁중의 의례와 정부의 행정을 통합하려고 한 의도가 있었다고 추론할 수가 있다. '예치의 질서'가 여기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산이 작성한 『경세유표』는 『주례』와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한다. 「방례초본인」을 보면, '불가역不可易'으로 표현되는 바꿀 수 없는 원칙 15개가 존재한다.[57] 관서의 수를 120곳으로 제한하고 6조 각각 20곳의 관서를 거느리게 하는 것, 벼슬의 등급을 9품으로 정하고 정과 종의 구별을 없애되 1품과 2품에만 정과 종을 두는 것, 호조를 교관으로 삼

55) 『經世遺表』 권1, 天官吏曹第一, 「議政府」(『定本』 제24책, 36쪽). "三公之職, 論道經邦, 寅亮天工. 議政府, 領議政公一人, 左議政·右議政公二人, 都贊成孤一人, 左贊成·右贊成孤二人, 舍人上士一人, 檢詳中士二人, 司錄下士二人. ○錄事庶下士六人, 書吏十二人, 皁隷三十人."

56) 『經世遺表』 권1, 春官禮曹第三, 「典壎司」(『定本』 제24책, 68쪽). "職官之制 , 宜咸有統率. 若網在綱 , 如衣挈領 , 乃可以寅亮天工."

57) 윤석호, 「〈방례초본인(邦禮草本引)〉에서 본 유배기 다산의 경세학」, 『역사와 실학』 71, 2020, 195쪽에 따르면, 불가역이라고 소개한 조목의 내용이 『경세유표』에서 수정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산의 유배기 저술이 해배기 이후 수정과 보완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부분은 『경세유표』 전체를 통해서 다시 검토되고 정리될 필요가 있다.

고 6부를 6향으로 삼는 것, 고적법을 적용하여 요순시대의 옛 제도를 회복하는 것, 대과와 소과를 합쳐 36명의 급제자를 뽑는 것, 전지 10결에서 1결을 취하여 공전으로 삼는 것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천자국과 구분되는 제후국으로서의 조선의 위상 및 조선의 시공간에서 오는 차이에 따라 국가 제도를 구성하는 것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58]

그런데 다산이 언급한 상제로서의 천신, 사직으로서의 지기, 오제로서의 인귀의 존재가 국가 길례의 제사 대상이고, 이는 결국 왕조의 정치적 기획과 운영을 통해서 온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고려하고 있어야 한다. 다산은 초월적 영역에서 상제와 지기 그리고 인귀의 형이상학적 위계질서를 제시하는 동시에, 세속적 영역에서 인군과 신하 그리고 백성의 정치적 위계질서를 동일한 논리로 구조화하기 때문이다.[59]

---

58) 『經世遺表』 권1, 「邦禮艸本引」(『定本』 제24책, 34쪽). "唯限官於一百二十, 使六曹各領二十, 斯不可易也. 定官於九品, 無正從之別, 唯一品二品, 乃有正從, 斯不可易也. 以戶曹爲教官, 以六部爲六鄕, 以存'鄕三物教萬民'之面目, 斯不可易也. 嚴考績之法, 詳考績之條, 以復唐·虞之舊, 斯不可易也. 革三館三薦之法, 使新進勿分貴賤, 斯不可易也. 守陵之官, 勿爲初仕, 以塞僥倖之門, 斯不可易也. 合大·小科以爲一, 取及第三十六人, 三年大比, 罷增廣·庭試·節製之法, 使取人有限, 斯不可易也. 文科·武科, 其額相同, 使登科者, 悉得補官, 斯不可易也. 於田十結, 取一結以爲公田, 使農夫助而不稅, 斯不可易也. 罷軍布之法, 修九賦之制, 使民役大均, 斯不可易也. 立屯田之法, 使京城數十里之內, 皆作三軍之田, 以衛王都, 以減經費, 使邑城數里之內, 皆作牙兵之田, 以護郡縣, 斯不可易也. 定社倉之限, 立常平之法, 以杜奸濫, 斯不可易也. 鑄中錢·大錢, 鑄銀錢·金錢, 辨九圜之等, 以塞走燕之路, 斯不可易也. 定鄕吏之額, 禁世襲之法, 以杜其奸猾, 斯不可易也. 開利用之監, 議北學之法, 以圖其富國強兵, 斯不可易也."

59) 백민정, 「귀신의 공공성과 제사의 정치-정약용의 상제·귀신론과 정치사상」, 『다산학』 44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24, 155쪽.

5. 결론

『춘추고징』 3, 흉례凶禮, 「서序」에서 다산은 "내가 옛날 상례에 전箋을 달면서(『喪禮四箋』) 관련된 의문儀文과 제도制度를 『춘추』에서 징험徵驗하여 취한 것이 많다."[60]라고 하였다. 요컨대, 『춘추고징』은 『상례사전』에서 고례古禮를 복원할 때 그 근거를 찾기 위해서 『춘추』를 읽어가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물론, 대체가 완성된 이후 1821년 봄 1차 증보가(辨), 1826년 겨울 2차 증보가(雜禮), 1830년 봄 3차 증보와 1833년 4차 증보가 있었지만 말이다.(禘之說)

『상례사전』을 작성하면서 고례를 복원하기 위해 그 증거를 찾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춘추고증春秋考證』이라고 명명하였다가, 이후 『춘추고징春秋考徵』으로 서명書名을 바꾼 것인데, 이는 고훈古訓과 고징考徵의 짝 개념을 완성했다는 의미가 있다. 『상서고훈尙書古訓』과 『춘추고징春秋考徵』이 대표적 저술이다. 고훈은 성현의 언사言詞가 가지는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고징은 성현의 행사行事의 실제적 징험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산이 조어造語한 일종의 '짝개념'이다. 고징의 의미가 예에 있지 포폄의 『춘추』에 있지 않다는 다산의 언급이 이를 확증해준다.

『춘추고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길례의 교제와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상제를 주향主享으로 지내는 교제와 오제五帝를 주향으로 지내는 체제의 성격과 의미를 재해석한 다산의 주요 비판 대상은 추연과 여불위, 그리고 이를 답습한 정현 등의 주소가들인데, 이는 그들이 귀신을 물신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산에게 상제는 무형무질하면서

60) 『春秋考徵』 3, 凶禮, 「序」(『定本』 제14책, 180쪽). "余舊箋喪禮, 其儀文·制度, 多於『春秋』取徵. 其的皪然有文者, 具已編入諸門, 今不復論."

유일무이한 존재이고, 천신과 지기 그리고 인귀 및 만물을 만든 조물자에 해당한다. 이러한 전제 아래에서 제사의 질서를 엄격하게 확보하려고 하였다.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체제에 대한 해석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증보로 추가된 「체지설禘之說」은 매우 중요하다. 군주의 소자출所自出로서의 오제五帝(人祭)를 함께 제사하는 체제는 종국에는 교제郊祭처럼, '소사상제昭事上帝'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그 지향점은 궁극적으로 상제를 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제사의 질서를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통치의 질서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상제 → 천신 → 지기 → 인귀'의 제사의 질서를 '군주 → 삼공·삼고 → 신하 → 백성'의 통치의 질서 모형에 적용한 것이다.

다산의 대표적인 경세서인 『경세유표』는 『주례』의 모형에 따라 육관(육조)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관장官長의 명칭이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천관은 치도治道를, 지관은 교육敎育을, 춘관은 예사禮事를, 하관은 군병軍兵을, 추관은 형법刑法을, 동관은 공사工事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 중에서 직관제도의 주요 원리는 '인량천공寅亮天工'과 '궁부일체宮府一體'이다. 전자는 천조天造를 계승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후자는 궁중과 부중의 일체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천조天造는 상제上帝의 조화造化로 설명될 수 있는데, 이는 유일무이한 상제가 천신·지기·인귀와 소통함으로써 천지만물을 조화造化하고 통어統御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제사의 질서를 다산이 엄격하게 세우려고 했던 이유이고, 이것이 바로 다산 경세학의 예치의 모형이다. 그리고 이상에 따라 마련된 것이 바로 『경세유표』라고 할 수 있다. 천天·지地·춘春·하夏·추秋·동冬의 육관六官 혹은 육조六曹 체제는 『주

례』에 제시되어 있는데, 하늘·땅은 인간의 생활터전을, 봄·여름·가을·겨울은 생활환경을 구성하는 자연세계이다. 이러한 자연세계는 상제가 구성한 물질세계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의식주를 해결하고 살아가야 하는 생활세계이고, 이 자연세계를 만들고 운용하는 귀신의 세계처럼, 인간은 제사 질서를 통치 질서의 모형으로 삼아 다스리고 운영해야 하는 곳이라고 다산은 생각했던 것이다.

요컨대, 다산은 『춘추고징』을 통해 예치의 국가 모델의 원형을 고증하고 징험하고자 하였다. 물론 이러한 다산의 기획이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다. 『경세유표』가 미졸업이고, 현실 정치에 구현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다산의 기획과 그에 따른 고징考徵의 노력은 당대 정치 질서에 대한 비판과 대안의 결과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춘추』에 대한 다산의 해석과 『춘추고징』은 발란반정撥亂反正이나 대일통大一統 등과 같은 통치 이상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주나라 예제의 원형을 발굴하여 고대의 예치 시스템 복원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기왕의 춘추학에서 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송대 춘추학이 이학理學의 개념과 이론을 『춘추』의 현실 사태를 해석하는 데 적극 개입함으로써 '춘추학春秋學의 이학화理學化'를 시도하였다는 점에 견주어보면, 다산의 춘추학은 '춘추학春秋學의 예학화禮學化'를 시도했다고도 할 수 있다.[61]

남는 문제가 있다. 먼저, 다산의 상제론에서 다루고 있는 천신天神이라는 존재에 대한 정의이다. 천신天神-지기地示-인귀人鬼의 구분을 통해서 무형무질의 존재론적 위상을 생각해보면, 천신에는 상제가 포함

61) 이 단락은 이 글의 논평자인 김동민 교수님이 제시한 몇 가지 생각에 대한 답변 차원에서 서술한 것이다. '춘추학의 예학화'에 대한 논리와 그 내용은 추후 다른 지면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다.

되기도 하고, 지기 또한 천신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천신은 모두 인귀 가운데 생시 공훈이 있었던 존재만을 의미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예컨대, 악신의 존재 유무가 하나의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 의식은 '천조天造'의 '조造', 즉 조화造化를 이른바 가톨릭 용법의 '창조'로 해석할 수 있느냐와도 연동된다.

둘째, 다산이 호명한 상제는 요청된 것인가 하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주자학의 이법천理法天을 상제천上帝天으로 대체하려는 것은 형이상학적 제사의 질서를 구상하기 위해 제시한 논리적 귀결일 뿐인가, 아니면 신앙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제사의 질서를 구상한 동시에 통치의 질서에도 적용하고자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천주교와 유교 사이의 선입견을 제거하고 다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셋째, 다산은 『경세유표』를 법을 다룬 것이지만, 예라고 명명한 이유를 제시하였다. 위협하고 겁박하는 것이 법이기에 국가를 다스리고 백성을 인도하는 방법으로 예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법치의 예치화'인가 '예치의 법제화'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사의 질서'를 '통치의 질서'의 모형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른바 예치 질서는 예제禮制를 만든 취지를 기준으로 법제法制를 만들었다는 잠정적인 판단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경세유표』 직관 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의정부의 본래 역할 찾기와 비변사備邊司의 처리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차후 『경세유표』 6조의 120개 관서와 유기적인 관계를 검토한 뒤에 상세하게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하관 병조」 제4, 「정관지속政官之屬」에서 비변사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는 대목 및 비변사에 중추부中樞府라는 편액을 달아 명실상부하도록 해야 한다는 언급이 있기는 하지만, 그

자세한 이유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논문투고일 2025년 2월 27일, 심사확정일 2025년 4월 14일, 게재확정일 2025년 4월 18일)

참고문헌

琴章泰, 「茶山禮學에서의 祭天儀禮 問題: 春秋考徵을 中心으로」, 『한국학』 35, 1985.

금장태, 「茶山의 社稷祭와 禘祭 考證」, 『종교학 연구』 16, 1997.

김동민, 「茶山 丁若鏞의 『春秋』에 대한 이해와 해석 방법 - 『春秋考徵』의 '不書卽位'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온지논총』 31, 2012.

_____, 「『春秋』의 禮制에 대한 『春秋考徵』의 분석과 고증 - 喪禮의 '踰年稱爵' 원칙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49, 2012.

_____, 「茶山 『春秋考徵』의 杜預에 대한 비판과 변론」, 『동양철학연구』 71, 2012.

김보름, 「정약용 저작집의 형성과 전승」,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6.

金容天, 朴禮經 譯注, 『譯注周禮注疏』 1, 전통문화연구회, 2021.

박종천, 「가장본家藏本 『춘추고징春秋考徵』과 『민보의民堡議』의 문헌적 검토」, 『다산학』39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21.

신진혜, 「정약용의 종묘 사시(四時)·臘享 고증과 그 의미」, 『역사와 현실』 97, 2015.

李裕鎭, 「丁若鏞 『春秋考徵』의 硏究」, 『공자학』 5, 1999.

윤석호, 「〈방례초본인(邦禮草本引)〉에서 본 유배기 다산의 경세학」, 『역사와 실학』 71, 2020.

전성건, 「다산 정약용의 춘추학과 경학방법론 - 『춘추고징』을 중심으

로」, 『한국학연구』 40, 2016.
_____, 「다산의 『춘추』의례와 『춘추고징』의 위상」, 『민족문화연구』 77, 2017.

국문요약

『춘추고징』은 고례를 복원하기 위해 작업중이던 『상례사전』을 저술할 때, 관련 사례를 찾기 위해서 『춘추』를 읽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물론, 대체가 완성된 이후 1821년 봄 1차 증보, 1826년 겨울 2차 증보, 1830년 봄 3차 증보, 1833년 4차 증보가 있었지만 말이다. 고례의 증거를 찾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춘추고증春秋考證』이라고 명명하였다가, 이후 『춘추고징春秋考徵』으로 서명을 바꾼 것인데, 이는 고훈古訓과 고징考徵의 짝 개념을 완성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춘추고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길례의 교제와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상제上帝를 주향으로 지내는 교제와 오제五帝를 주향으로 지내는 체제의 성격과 의미를 재해석한 다산의 주요 비판 대상은 추연과 여불위, 그리고 이를 답습한 정현 등의 주소가注疏家들인데, 이는 그들이 귀신을 물신物神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산에게 상제는 무형무질하면서 유일무이한 존재이고, 천신과 지기 그리고 인귀 및 만물을 만든 조물자에 해당한다.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체제禘祭에 대한 해석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증보로 추가된 「체지설禘之說」은 매우 중요하다. 군주의 소자출所自出로서의 오제五帝(人祭)를 함께 제사하는 체제禘祭는 종국에는 교제郊祭처럼, '소사상제昭事上帝'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그 지향점은 궁극적으로 상제를 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제사의 질서를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통치의 질서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상제 → 천

신 → 지기 → 인귀'의 제사의 질서를 '군주 → 삼공三公·삼고三孤 → 신하 → 백성'의 통치의 질서 모형으로 일치시킨 것이다.

다산의 대표적인 경세서인 『경세유표』는 『주례』의 모형에 따라 육관(육조)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관장官長의 명칭이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천관은 치도治道, 지관은 교육敎育, 춘관은 예사禮事, 하관은 군병軍兵, 추관은 형법刑法, 동관은 공사工事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 중에서 직관제도의 주요 원리는 '인량천공寅亮天工'과 '궁부일체宮府一體'이다. 전자는 천조天造를 계승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후자는 궁중과 부중의 일체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천조天造는 상제上帝의 조화造化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는 유일무이한 상제가 천신·지기·인귀와 소통함으로써 천지만물을 조화造化하고 통어統御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제사의 질서 체계를 다산이 엄격하게 세우려고 했던 이유이고, 다산 경세학의 예치으로 진전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 따라 마련된 것이 바로 『경세유표』이다.

주제어 | 정약용, 춘추고징, 예치사상, 예학, 고훈, 고징, 인량천공, 궁부일체.

Abstract

Jeong Yak-yong's *Textual Criticism on Spring and Autumn Annals* and Ritual Political Thought

Jeon Sung-kun

Professor, Gyeongkuk National Univ.

The Textual Criticism on Spring and Autumn Annals(『春秋考徵』) was created in the process of reading *Spring and Autumn Annals*(『春秋』) to find related cases when writing *The Four annotations of funeral rites*(『喪禮四箋』), which was being worked on to restore the case. Of course, after the replacement was completed, there were the first increases in the spring of 1821, the second increase in the winter of 1826, the third increase in the spring of 1830, and the fourth increase in 1833. Since the evidence of the case was found, it was initially named The Historical Research on Spring and Autumn Annals, but later changed the name to The Textual Criticism on Spring and Autumn Annals, which can be said to have completed the concept of pairing hilological learning(訓詁) and textual criticism(考徵).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Textual Criticism on Spring and Autumn Annals is the memorial service for God(郊祭) and the memorial service for the five Emperor(禘祭) of luck rites(吉禮). The main criticisms of Tasan, who reinterpreted the nature and meaning of the system, which treats God(上帝) as the main object of a memorial service and the five Emperor as the main object of a memorial service, are the commentator, such as Zou Yan(騶衍), Li, Bu-wei(呂不韋), and Zheng Xuan(鄭玄), who followed it, because they interpret intangible spirits as tangible spirits. For Tasan, God creates heavenly god, earthly god, human god, and all things.

What is particularly important is the interpretation of the memorial service for the five Emperor. Therefore, The Description on Memorial Service for the Five Emperor added as the last supplement is very important. The reason for securing such order of rituals is to secure order of governance. The order of rituals of 'God → heavenly god → earthly god → human god' was matched with the order model of the governance of 'The Lord → the three chancellor → the public official → the people'.

Gyeongseyupyo(『經世遺表』), Tasan's representative scripture, presents the six ministries system according to the model of the officiating. This is why Tasan attempted to strictly establish a system of order for rituals, and it can be said that the deposit of Tasan statecraft learning progressed. *Gyeongseyupyo* was prepared according to the above.

Key Words | Jeong Yak-yong, Historical Resarch on *Spring and Autumn Annals*, ritual political thought, ritual study, hilological learning, textual criticism, lighting the harmony of the sky, the unity of the palace and the government.